

第49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運營委員會 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7月25日(火) 14時 03分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運營및實費辯償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議員의 日費와旅費의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丁昌熙議員 外 4人 發議) 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運營및實費辯償條例中改正條例(案)
(安哲柱議員 外 4人 發議) 5面
3.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議員의 日費와旅費의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朴鍾植議員 外 4人 發議) 9面

(14時 03分 開議)

○委員長 羅在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해서 재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중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시간까지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실상부하게 제일 첫번째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성격이 우리와 직접 직결되는 일비 여비 건도 있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신중한 토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안제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議案係長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案係長 洪柱詰 議案係長 洪柱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9회 서울특별시 중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이 1995년 7월 18일자 丁昌熙議員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95년 7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

었고,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運營및實費辯償條例中改正條例(案)이 1995년 7월 18일 安哲柱議員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95년 7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議員의 日費와旅費의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이 1995년 7월 18일 朴鍾植議員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95년 7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議案係長!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丁昌熙議員 外 4人 發議)

(14時 06分)

○委員長 羅在岩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丁昌熙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昌熙議員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羅在岩委員長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희망찬 제2기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첫번째 개최되는 제49회 임시회 안건 중 우리 구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창신2동의 인구 감소에 따라 종전 2인의 의원에서 1인의 의원 선거구로 감소되어 의원 정수가 22명에서 21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위원회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부의장을 위원회 활동에 참석시키는 안과 위원회 정수를 조정하는 안이 있는데 타 구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24개 의회 중 의원수가 많은 6개 구만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배제하고 있으며 의원수가 30명 미만인 18개 의회는 부의장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할지역구의 민의를 수렴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도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발의년월일 : 1995. 7.

제 출 자 : 정창희의원 외 4인

가. 제안이유

○상기 조례는 상위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구 2만 미만 관할구역에서는 의원정수 1인으로 되어 있는 바, 우리구 창신2동의 주민인원감소에 따라 현행 인원수에서 2인이 1인으로 변경되어 자체 조례개정이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중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의회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제출하게 된 것임.

나. 주요골자

○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부의장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2항)

다. 참고자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라. 개정(안) : 별첨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의장및부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②의장 및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현행과 같음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委員長 羅在岩 丁昌熙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1995년 7월 18일 丁昌熙議員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

(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의 개정 배경입니다. 종로구의 회 의원이 종전 22인에서 창신2동의 의원님 감소로 21인으로 감소됨에 따른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골자는 종전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창신2동에서 들어진 의원 1인의 몫을 부의장이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관련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제23조입니다. 제1항 자치구 지방의회 의원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을 넘는 동에 있어서는 2만을 넘는 때 2만까지마다 1인을 더한다. 그래서 창신2동 인구수를 살펴보면 1기 선거 때는 2만948명이었습니다. 1994년 12월 말 현재 1만7,061명이고 1995년 6월 30일 현재는 더 줄어서 1만6,81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번째 종로구의회의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위원회는 9인, 시민행정위원회는 11인, 도시건설위원회는 9인입니다. 다음 종로구의회의위원회조례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자격 내용입니다. 제1항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제2항 의장 및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원 정수가 1인 감소됨에 따른 위원회 위원수 조정 사항으로써 조정 방법은 제2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개정하는 방법과 11인을 10인으로 개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2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개정치 않고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 않았던 부의장을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2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리 종로구를 제외한 24개 구청 중에서 6개 구청 외에는 전부 부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부의장이 상임위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겸위되지 않는 한은 의정활동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 부의장 불참 규정을 개정해서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는 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는 제안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참고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4년간 부의장이 아무 상임위원회에도 참여를 안다 보니까 사실상 의장이 존재하고 계시는 한 어떤 하는 일이 결여되는 그런 맹점이 있었다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부의장을 상임위원회 위원에 가담을 시키자는 그런 안입니다. 골자는 그러니까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李炯述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丁昌熙義員 위원회조례 중 제4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 정수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둘 중에 한 가지는 어쨌든 조정을 해야 됩니다.

○李炯述委員 그런데 왜 1기에서는 부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못하도록 했던 법적인,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짝 홀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丁昌熙義員 지금 답변이 충분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명으로 해도 과반수가 참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치면 6분이 참석해야만 회의가 성립됩니다. 초기에 의장단이 구성이 되고 부의장에 대한 위상을 좀더 예우해 드린다는 측면에서 부의장이 상임위원회에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은 격의가 좀 맞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부의장님에 대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배제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난 4년 간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검토해 본 결과 의장이 겸위가 아닌 시에는 일체의 의회 활동을 배제한 생활이라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장님은 대내외적인 활동이 너무 빈번하고 거기에 대한 보좌를 하는 걸로 부의장의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한계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또 의원 활동도 배제된다고 치면 많지 않은 숫자의 의원님들 중에서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역할과 기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2기 출범과 더불어서 부의장님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李炯述委員 제안자의 답변 중에 부의장은 분명히 의장을 보좌하는 게 아닙니다. 부의장은 의장이 유고시에 의장이 역할을 수행할 뿐이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는 역할만이 아닌 걸고 알고 있습니다.

○丁昌熙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했다고 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지난 4년간 부의장을 상임위원회에 배제시킨 근본적인, 그때 많은 의원님들의 똑같은 이야기가 의견이 부의장은 그래도 전체 의원들의 위상을 뭔가 돋보이고 부의장으로서 뭔가 전체 의원들을 여러 가지 일에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부의장을 상임위원회에 같이 동참시키지 않고 전체 의원들에 대한 많은 대외적인 활동을 하라고 했던 그 당시에 부의장은 전체 의원들의 위상을 높이지 못하고 의장이 유고시 부의장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부의장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중간에 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부의장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개한다고 치면 아까 李炯述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부의장님에 대한 예우관계나 권위에 다소 손상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우려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의 집약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똑같이 꺾고 다 확인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장이 권위가 생겨서 의장의 역할을 대행해서 업무를 직무를 대행하는 그런 사례가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의장으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배제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종로구에 대한 행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박탈당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는가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부분적으로 개진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집약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예, 金以煥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以煥委員 창신2동 金以煥委員입니다. 현재

부의장님 역할이 자세한 설명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丁昌熙委員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9조에 보면 부의장의 의장 직무 대리가 있습니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시된 사항은 그러한 사항으로 제9조에만 명시가 되어 있을 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특별하게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중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만 의장의 직무대리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있을 뿐 평상시에는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별무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대두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以煥委員 그러면 지금 부의장은 하는 일의 의장의 유고시 대행할 수 있다. 이것만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1기 때 왜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 놔는지 아까 숫자적으로 홀수 짝수에 의해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과연 말이 잘 안맞는 것 같아서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규칙에 명시된 사항 외에 여러 의원님들의 화합과 단합, 또 의견 조정을 통해서 지금 의회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고 의회의 권위를 더욱 더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활동사항이 많이 개발해서 해야 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어떤 행사에 있어서 의장님이 일일이 다 참석을 못하고 대행해서 참석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런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대행의 직무 역할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었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도 배제시켰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됩니다. 지금 1기에서 재선되신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은 부의장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타구의 전례로 봐서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25개 구청에서 종로구를 포함해서 7개 구청만이 현재까지 부의장에 대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의원수가 적은 구에서는 유일하게 계속 종로구만이 지금 부의장의 상임위원

회 활동을 배제시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지 않은 의원님들을 좀더 한 분이라도 더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좋은 안건의 처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金以煥委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다른 의원은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제안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玄壽漢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 중 제4조2항을 볼 것 같으면 “의장 및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지금까지의 현행 조례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여지껏 상임위원회 활동을 못하신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1명 우리 종로구의회의원 중에서 의장님 한 분을 빼고 나머지를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이 하나 줄게 되면 여담인데 11명인데 10명으로 줄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폭넓게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 가지고 4조2항을 수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委員長 羅在岩 제안자의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運營및實費辯償條例中改正條例(案)(安哲柱議員 外 4人 發議)

(14時 27分)

○委員長 羅在岩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運營및實費辯償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安哲柱議員!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哲柱議員 안녕하십니까? 安哲柱議員입니다. 존경하는 羅在岩 委員長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6월 27일 종로구 청운동 선거구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으로 초선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運營및實費辯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46조제1항에 의거 감사위원의 수를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규정하고, 제2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따라 우리 구의회 결산감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중 제2조에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4조에 대표감사위원은 의원이 된다는 내용으로 하여 결산감사의 질을 높여서 내실있는 감사가 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 상기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 함이니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決算檢查委員
選任·運營및實費辯償條例中改正條例(案)

발의년월일 : 1995. 7.

발 의 자 : 안철주의원 외 4인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94. 7. 6. 대통령령 제 14317호)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위원수를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자체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감사위원

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중 제2조 및 제4조를 개정하여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제출하게 된 것임.

나. 주요골자

- “검사위원 중 의회의원의 수는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안 제2조에 단서 신설)
- “대표검사위원은 의원이 당연직으로 한다”로 개정(안 제4조)

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라. 개정(안) : 별첨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표검사위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검사위원은 의원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한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다만,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대표검사위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검사위원은 의원이 되며, 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호선하여 대표검사위원을 선임한다.		제4조(대표검사위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중에서 대표검사위원은 의원이 된다

○委員長 羅在岩 安哲柱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1995년 7월 18일 安哲柱議員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입니다. 결산검사에 관한 모범규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가 1994년 7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모범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 골자는 결산검사위원수를 3인으로 하고 3인을 구의원 1인,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며, 대표 검사위원은 구의원으로 한다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출납폐쇄는 2월 28일을 얘기합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검사위원의 선임 방법입니다. 제1항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

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즉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 5인이라 하더라도 3분의 1이면 한 사람밖에 안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 중 제3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제2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원 이외의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첫번째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두번째가 서울특별시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 제5조 검사위원의 직무입니다. 검사위원은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검사제도는 전년도 구청 예산을 출납폐쇄 후 2월 28일 후에 3월 이내에 구청장이 결산하여 의회에 결산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의장이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여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 후 정기회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결산은 감사와는 달리 건별 징계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의 잘잘못을 평가해서 집행부 장의 공과를 평가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고 예산심사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서 개정으로서 상위법 개정 취지는 검사위원의 수는 늘리고 이에 참여하는 의원수를 3분의 1, 즉 1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는 결산검사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다수 참여시켜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도모하자는 개정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구의원이 종전에 3명 참여하던 것을 1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결산 행정에 대한 의결권의 축소가 초래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

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 10월달에 열린 제41회 임시회에서 일단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업무가 의회의 법정 업무이고 결산 시기도 법정 사항이므로 금회 처리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자는 제안석에 가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요령과 방법은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李炯述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서 검사위원수는 시·군·구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의회에서는 의장이 결산검사위원 3인 의원은 1인이고 전문가 2인을 선임하도록 못을 박아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인 이상 5인 이하로 법에 되어 있는데 5인까지 하면 안되는지 의장은 결산검사위원 3인으로 정해 가지고 의원은 1사람이고 전문가 2인으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못을 박아놓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安哲柱議員 그 사항은 5인으로 하더라도 구의원 수는 3분의 1이면 1명이니까 그러면 그 사항으로 하면 5인으로 할 경우에 구의원 1명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4명입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5인으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비용만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3인으로 한 것입니다.

○李炯述委員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가 여러 사람 와가지고 증빙서류를 많이 검토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安哲柱議員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도 공인회계사한테 하루에 일당 5만원이 30일간 150만원이 지출되게 됩니다.

○李炯述委員 그런 데는 사람 숫자를 더 줄이면 금액이 더 적게 나가겠네요

○安哲柱議員 그렇죠. 공인회계사 1명, 구의원 1명 해도 되는데 우리 재원이 약 1천억원 되니까 예산에 한 2명이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먼저번에도 결산검사위원수가 3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인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

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李炯述委員 본위원이 묻고 싶은 점은 검사를 하는 근본 취지가 뭔가 잘못된 점이 있느냐 해서 거기다가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어떻게 검사 수수료가 얼마 더 나간다 해서 인원수를 줄인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의원 혼자 나가서 볼 것 같으면 한푼도 안 나간다 이것이죠. 그래서 3명으로 구의원 1명, 전문직에 있는 2사람을 못을 박은 이유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어보면 수수료가 더 나간다 해서 거기다가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전문가가 필요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제대로 찾아보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그것을 찾아보려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검사수수료만 몇푼 더 나간다 해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3명을 못을 박은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安哲柱議員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법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했습니다. 법에서 적은 규모의 구일 경우에는 3인으로 해도 되고 또 인구가 많은 큰 구일 경우에는 5인까지 되라 그렇게 재량권을 준 것으로 봐서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봐서 적은 규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 취지를 봐서 3인 이상 5인일 때 3인 해도 좋고 5인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3인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검사는 하나의 감사 의미와는 달라서 이것이 하나의 잘잘못을 따져 지적해서 징계처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전체 예산 흐름을 파악해서 잘잘못을 기관장한테 묻는 하나의 정치적 의미밖에 없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치유가 되고 이것이 다시 환원되어서 다시 반복하도록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정신으로 봐서 그래서 3인으로 해도 우리 종로구의 규모 정도는 공인회계사 두 사람과 구의원 대표격으로 참여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우리 구의원 3명이 그 결산검사 업무를 이미 해온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인 정도면 더욱이 구의원 3명이 하셨는데 전문가가 두 명이 끼었으면 위원수로 봐서는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고려가 됩니다.

○李炯述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예,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십니까.

○玄壽漢委員 회계 전문인 2명을 실비변상비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들과 같이 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실비변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합의점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었는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安哲柱議員 결산검사 업무는 원래는 구청 소관업무입니다. 다만 우리가 위원만 의장이 의회의결을 받아서 추천해 줄 따름입니다. 그래서 위원에 관한 어떤 실비변상은 구청 예산으로 잡혀 있고 구청에서 그 기준액이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기준을 정했다면 우리 의원들이 일비라고 해서 하루 일당이 5만원인데 그러면 전문인데 이 사람들이 5만원을 받고 나와서 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사실 그 사람들이 5만원 가지고 안된다. 10만원이다 뭐다 그러면 구청 실무진에서 더 올려줄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安哲柱議員 그렇게는 안됩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면 그것이 어떤 규정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安哲柱議員 운영변상조례 여비는 1만원 일비는 5만원 딱 잡혀져 있고 또 이것이 30일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일간 150만원인데 우리가 공인회계사 추천 받을 때는 공인회계사 협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서울시 전역에 사는 아무나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종로구 관내에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공인회계사는 청운동에 한 분 계시고 평창동에 한 분 계시는데 그래서 지역살림을 돌본다는 일당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것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150만원 되면 이것이 한달 내내 매달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한다면 자기 사무실 일도 할 일도 있고 해서 그 관계는 일비에 관해서는 공인회계사하고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불만은 없었습니다.

○玄壽漢委員 제가 묻는 것은 어느 조례 규정변상금조례 규정에 의해서 5만원이 나갈 수 있게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차제는 타협에 의해서 공인이기 때문에 '나 그것 받고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 '95년도도 아니고 '96년도에는 어떤 규정이 실비변상조례에 규정이 없다면 매년 그것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점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哲柱議員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 단계에서 의원님들이 그때 결산검사 위원들 수당을 의결하신 바 있고 또 사실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의원님들 일비를 5만원 주는데 의원님들 하는 일보다 뭐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5만원이면 뭐 의원 일비가 10만원이 되면 그 양반들도 10만원 주면 모르지만 5만원이면 타당하다고 봐 집니다.

○委員長 羅在岩 답변 되셨습니까?

○玄壽漢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중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중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朴鍾植議員 外 4人 發議)

(14時 50分)

○委員長 羅在岩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朴鍾植議員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植議員 朴鍾植議員입니다.

우리 의회 운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진력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羅在岩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개정조례(안)의 배경은 지방자치법시행령 '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상위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를 월액 35만원으로 지급하고 일비를 회의수당이란 용어로 개정하며, 본 조례 적용시기를 '95. 7. 1부터 소급 적용하는 부칙을 두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1995. 7.

발 의 자 : 박종식의원 외 4인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94. 7. 6 대통령령 제14,317호)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액 지급과 회의수당, 여비등의 내용을 정비하여 일비와 여타조례를 개정하여 의회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
- 회의수당이란 용어신설

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중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의정활동비)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350,000원으로 한다.

②의정활동비는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월단위가 아닐 경우(최초 임기 개시일 또는 퇴직일 등)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3 조(회의수당)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일 50,000원으로 한다.

②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회의수당은 회의가 끝나는 익일에 지급한다.

제 4 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 5 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 ①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②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6 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회의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중로구여비지급조례의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제4조, 제5조와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장·부의장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6,500	20,700	11,000
의 원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6,500	16,200	10,500

<비고>

1.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표 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제4조, 제5조와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일당)	숙박비 (야당)	식 비 (야당)	준 비 금	
								15일미만	30일이상
의 장· 부의 장	• 2등급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을 또는 철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2등급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철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등 정책	실비액	가등급25	가등급130	가등급107		
					나등급25	나등급 90	나등급 78	140	170
의 장			2등 정책		다등급25	다등급 72	다등급 58		195
					라등급25	라등급 62	라등급 49		
의 장					가등급20	가등급114	가등급 81		
					나등급20	나등급 74	나등급 59	130	155
의 장					다등급20	다등급 55	다등급 44		180
					라등급20	라등급 46	라등급 37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동경, 홍콩

나. 나등급

(1) 아세아주,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트리니다드토바고,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4) 중동·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다. 다등급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부르나이, 필리핀, 타이, 중화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수리남

(3) 유럽주 :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비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셔스

라. 라등급

(1) 아세이주·대양주 : 인도네시아, 버마, 스리랑카, 튀지, 네팔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쿨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과아
이, 아르헨티나

(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4) 중동·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威士랜드, 가나, 소말리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委員長 羅在岩 朴鍾植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1995년 7월 18일 朴鍾植議員 外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월액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5년 7월 1일 개정됨으로써 관련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골자는 의정활동비 35만원을 신설하고 종전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회의출석 정의를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회기 중 휴회, 공휴일도 출석일수로 간주를 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시행령에서 못박아져 있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부 비용을 지급한다. 다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입니다. 1항 법 제32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4,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5,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 위원회를 포함합니다.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조항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내무부에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등의 지급기준 변경 첫째 의정활동비는 35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회의수당은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계산을 하되 출결상황은 속기록과 연계해서 체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지방의회의 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는 폐지한다. 지금까지 의원님들 나오시면 교통비 6,500원, 식비 10,500원 해서 17,000원씩 나왔는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제약을 받아야 되는지를 살펴보

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법정위임에 의한 명령적 성격이므로 시행규칙적 지위에 있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개정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회의수당의 지급 출석범위의 축소입니다. 종전에는 회기 중에 휴회를 하더라도 출석일수로 간주해서 금일같이 4일간 회기일수는 상임위원회가 하루하고 하루는 심사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 휴회하더라도 4일간 일비가 나갔습니다마는 이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휴회한 것은 일비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현지 교통비 및 식비 지급 문제입니다. 이하 관내여비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교통비 6,500원, 식비 10,500원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달된 것을 봤듯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6 비고란에서 명시한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관내여비 지급규정은 이 개정에서 아마 입법상 실수로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과 내무부 지침이 상충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회의수당 지급은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규정된 상위령에 따라서 개정한 바, 향후는 회기 결정시에 이를 참고해서 80일이라는 회기를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 관내여비 지급 문제는 내무부의 법 개정 의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시 별표 규정을 개정을 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종전 지급규정이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17,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이 규정도 '95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소급적용을 규정한 부칙은 이익을 해하지 않는 소급효 규정이므로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자이신 朴鍾植議員은 제안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종전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잘 보시고 우리 蔣昭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 내용을 잘 보시면 여비전에 대해서 내무부의 지침은 제한하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급이라든가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관내여비 지급기준은 유효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이 제시되었으니까 잘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丁昌熙委員! 말씀하십시오.

○丁昌熙委員 丁昌熙委員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된 골자 중에서 회의 출석에 대한 정의를 명쾌하게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구의회의 사정상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간에도 의회에 참석을 안하고 현지에서 자료 수집이라든가 현장답사, 검증, 행정사무감사 등의 사유로 구의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속기록과 연계해서 참석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서 참석한 날 이 회의록에 근거해서 지금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 지금 속기록과 연계해서 출석상황이 인정 안되는 때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委員長 羅在岩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상당히 지금 중요한 사항이어서 회의진행을 하는데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1시간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간만 停會를 하고 停會中에 상의할 것은 하셔서 우리만의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 10분간만 停會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한 10분간만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 01分 會議中止)

(15時 35分 繼續開議)

○委員長 羅在岩 在籍委員 9명 중 出席委員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鍾路區議會 臨時會 제1차 運營委員會 續開를 宣布합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네, 丁昌熙委員! 질의하세요.

○丁昌熙委員 질의를 하는 時間인데 긴급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많은 議員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심도있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議員님들의 의견을 보다 더 집약해서 다시 속개해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내일 常任委員會에 전체 議員님들이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常任委員會가 끝나면 전체 議員님들이

모이셔서 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사안으로 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그러면 제안하신 朴鍾植議員!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朴鍾植議員 答辯席에서-찬성합니다.)

그러면 丁昌熙委員 말씀대로 이 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常任委員會 전체 議員들이 상의를 해서 다음에 다시 이 問題를 다루도록 이렇게 丁昌熙委員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丁昌熙委員의 긴급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정이 있으므로 내일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항 의원일비와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내일 다시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 40分 散會)

○出席委員 (8人)

羅 在 岩	安 哲 柱	李 炳 文
玄 壽 漢	李 炯 述	丁 昌 熙
朴 鍾 植	金 以 煥	

○出席議員

安 哲 柱	朴 鍾 植	丁 昌 熙
-------	-------	-------

○出席專門委員

尹 柱 彩	蔣 昭 秀
-------	-------